

## 전자민원처리공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으로 제출하신 처리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01.민원내용

민원요지 위반건축물 추진 관련

접수번호 1AA-0805-044711

접수일자 2008.05.23

#### 질의내용

‘위반건축물 추진방안 통보(건교부건축 58550-3639, 1999.9.11)’ 및 ‘1992.6.1 이전에 발생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진방안(건교부건축기획팀-188, 2005.9.12)호’와 관련입니다. ‘99.9.11에 시달된 위반건축물 추진방안에 의하면 ‘92.6.1 이후 위반된 위반건축물의 경우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진」으로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05.9.12 시달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추진방안에 의하면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 납부된 경우 추진[건축58550-3639(1999.9.11)호 참고]」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두 지침이 서로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저의 건축물은 ‘92.6.1. 이후 증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축하여 위반건축물을 건축하였기 관할 구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건축물은 현행 건축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였기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추진을 받으려 하고 있으며 관할 구청에서는 고발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하며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여 질의하니 반드시 고발조치 와 이행강제금을 1회 납부된 경우에만 추진이 되는 것인지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중 1개만을 시행된 경우에도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 02.민원처리 내용

담당부서 국토해양부 > 감사관 > 고객만족센터 > 건축반

담당자 최중화

전화번호 044-201-3761

회신내용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추진"이란 민법상 제도가 있으며, 건축법령에는 추진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당해 불법 건축물을 추진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라고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1회는 부과·납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지, 추진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 및 현지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할 것이오니, 보다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종합행정을 처리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려운 부분 또는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건축서비스팀(전화 1599-0001)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좋은 하루 되십시오.